

- 2017년 3월 (제43차)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목 차

| | | | |
|---|-------------------------------------|-------|----|
| 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 |
| 2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5 |
| 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 | 10 |
| 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19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증명은”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6조”를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나목(2)의 증명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징수시기)”를 “(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의 제2호 종목란 중 다목 “(8) 안경업소개설변경사항(양수, 장소이전)신고”를 “(8) 안경업소 개설 변경사항(양도·양수)신고”로, “(10)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양수,장소이전)신고”를 “(10)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양도·양수)신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 ~ 6. (생략)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7조 -----</p> <p>-----</p> <p>-----</p> <p>-----</p> <p>-----</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 . 다만, 제2호부터 제10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 3. ~ 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9. · 10.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한다. 다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7조(징수시기) ①·② (생략)

<신설>

를」 제4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9. · 10. (현행과 같음)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나목(2)의 증명

<삭제>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각각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3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각각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0조제2항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연 3퍼센트”를 각각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으로,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및 제4호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인접”을 각각 “연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7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다.

제73조제4항 단서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1조의2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별표 2중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로,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를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 및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 |
|--|
| <p>물품의 품종·상태구분</p> <p>1. 물품의 분류</p> <p>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p> <p>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p> <p>2. 품종구분 기준</p> <p>가. 비품</p> <p>(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p> <p>(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p> <p>나. 소모품</p> <p>(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p> <p>(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p> <p>(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p> <p>3. 물품상태 분류기준</p> <p>가.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p> <p>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p> <p>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p> <p>라.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p> |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 내 아동의 문화 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에 필요한 아동 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동행카드”란 아동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2. “학교 밖 아동”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문화 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금액을 아동 동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충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발급대상자) ① “카드”의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아동으로 한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의 아동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6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각각 다른 아동의 경우에는 먼저 신청하는 하나의 “카드”만 발급할 수 있다.

1.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날
2. 학교 밖 아동 : 만 13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2일

- ② 발급시기 이후에 전입한 아동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중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분의 사용을 중

지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여부를 월 1회 조회하여야 하며 “카드”의 사용 중지일은 제11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해당 아동의 명단을 통보한 다음날로 한다. 단,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업무 개시일로 한다.

제7조(지원금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에 반기당 5만원씩 충전하여 연간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 중 전입한 아동은 동일하게 지원하되, 하반기 중 전입한 아동은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등) ① “카드”는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카드”의 신청기한은 발급 해당연도의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9조(사용 등) ① 제8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성북구 관내·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0조(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11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 동행카드 (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발급대상자 (청소년)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학교명 | 학년 · 반 |
| | 학교 밖 청소년 [] 해당 [] 해당 없음 | |
| | 아동 동행카드 발급대상자 [] 해당 [] 해당 없음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신규 []재발급([]분실 []훼손 []그 외) |

| | | | |
|-----|------|--------|------|
| 신청인 |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동 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

| | | |
|-----|--|------------|
| 비 고 | | 수수료 없 음 |
|-----|--|------------|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
| | <p>1. 재학증명서(학교 밖 아동이거나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p> <p>2. 아동 동행카드(아동 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p> <p>3.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법정대리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p> <p>4.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p> <p>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p> <p>※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아동 동행카드 지급 및 관리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아동 동행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1. 아동 동행카드의 발급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아동이 직접 아동 동행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2. 아동 동행카드는 지정된 분야의 사용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3. 아동 동행카드는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학교 밖 아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동행카드 (재)발급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발급대상자 (청소년)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학교명 | 학년 · 반 |
| | 학교 밖 청소년 [] 해당 [] 해당 없음 | |
| | 아동 동행카드 발급대상자 [] 해당 [] 해당 없음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 |
| 단 체 정 보 | 단체구분 | [] 아동복지시설 [] 기타() |
| | 단체명 | 담당자 성명(담당자가 있는 경우) |
| | 주소 | |
| | 전화번호 |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 대표자 정 보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 본인 여부 | [] 시설 대표자 본인 [] 대리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동 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

| | | |
|-----|--|------------|
| 비 고 | | 수수료 없 음 |
|-----|--|------------|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
| | <p>1. 재학증명서(학교 밖 아동이거나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p> <p>2. 아동 동행카드(아동 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p> <p>3.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소재지와 같은 주소 확인 후 반환합니다.)</p> <p>4.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p> <p>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p> <p>※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아동 동행카드 지급 및 관리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아동 동행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1. 아동 동행카드의 발급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아동이 직접 아동 동행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2. 아동 동행카드는 지정된 분야의 사용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3. 아동 동행카드는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학교 밖 아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아동 동행카드 (재)발급 위임장

| | | |
|-----|------|----------|
| 수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
| 위임자 (법정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동행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지역을 말한다.
-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마을-학교 협력 지원 사업
3.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지역연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육관련 지역특화사업
6. 민학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제안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학·관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대표 4명을 포함한 16명 이상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공동대표는 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국장, 소관부서장

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거나 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4명 이내
4.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 6명 이내

④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하는 기구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협의회 상정 안건 선정
2. 혁신교육지구 사업 계획 수립
3.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
4. 민·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혁신교육지구 홍보
6. 혁신교육지구 모니터링단 운영
7. 민·학·관 의견 수렴 및 조정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선정과 의견 조정 등 실무를 처리하며,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산하에 분과 및 사업별추진단과 사업별추진단장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혁신교육 주체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공동대표는 구 및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부서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실무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분과의 분과장 및 주체별협의체 대표 등이 된다.

⑤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업무소관 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가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 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등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원센터(이하 “혁신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15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 인적·물적 자원 기초조사 및 발굴
2. 민학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3. 마을-학교 연계사업 지원

4. 그 외 혁신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운영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
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